

대전지방법원 2021. 2. 4 선고 2019가단1273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정윤, 박교식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12. 10.

판결 선고2021. 2. 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5. 1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8. 5. 17. 접수 제222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2016. 2. 14. D 주식회사(이하 'D'라 한다)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, 이후 신용카드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카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나. D는 2018. 8. 31.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 한다)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. E은 2018. 9. 7.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5285호로 'C은 E에게 15,396,524원과 위 돈 중 14,586,696원에 대하여 2018. 9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6%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62,700원을 지급하라.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8. 10. 2. 확정되었다. 다. 원고는 2019. 1. 15. E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, E은 2019. 1. 31.경 C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.

라. 한편 C은 2018. 5. 16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'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피고'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다음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8. 5. 17. 접수 제222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 마.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 164,869,8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, F조합에 대하여 58,130,000원, G카드에 대하여 833,000원 및 1,125,000원, H카드에 2,844,000원, 4,087,000원, 1,255,000원, D에 14,586,696원 합계 82,860,69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I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1)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64,869,800원이고, C은 F조합 등에 82,860,69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,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. 이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, 이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배우자인 K에게 약 140,000,000원을 대여한 것이 있어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가 K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사해행위 성립을 방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).

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(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 사망 이후 아들 L이 C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하자, 피고의 채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, 피고는 C의 재산 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세진

별지